

Ask.koreadaily.com

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.



이민/비자
이동찬 변호사

Q 새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

▶문 = 미국 회사에 H-1B 신분으로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. I-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이미 승인됐다. 한 달 전에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.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해고를 당했는데 영주권은 받을 수 있나?

▶답 =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됐더라도 I-485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지 않는 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. 스폰서 회사에 I-140 청원서를 철회하지 않도록 요청하고, 하루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.

I-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을 기반으로 워크퍼밋을 받으면 어디서든 취업할 수 있지만 I-485가 거절되면 워크퍼밋 또한 취소되므로 H-1B를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. 이민법 규정상 해고된 후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H-1B 연장을 할 수 있다.

이민법 INA § 204(j)에 의거하면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180일이 지난 후, 새로운 직업이 I-140 청원서에 명시된 직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면, 다시 노동허가서와 I-140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

을 받을 수 있다. 앞의 이민법 조항의 혜택을 원하는 경우 이민국에 I-485 Supplement J 폼이 제출되어야 한다.

그러나 상담한 분의 경우 현재 I-485를 제출 후 아직 18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I-485 Supplement J 폼을 제출할 수 없다.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과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그 날짜가 I-485 제출 후 18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I-485가 거절될 수 있다. 취업이민은 인터뷰 없이 I-485가 승인되기도 하지만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다.

요즘 이민국의 서류심사가 느린

점을 고려하면 I-485를 제출하고 180일이 지난 후 인터뷰가 있을 것 같지만 케이스마다 다르다. 내 경험으로는 인터뷰가 I-485 제출 후 180일이 경과되기 전에도 있었다.

새 고용주를 통해 H-1B를 연장한다면 I-485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체류 신분에 지장이 없고 노동허가서와 I-140 청원서는 새 고용주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 안전하다. 그리고 케이스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전 케이스의 우선 일자를 활용할 수 있어 영주권을 처음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.

▶문의: (213)291-9980